

비누적 성과급 운영 지침

제정 2019. 6.17

개정 2024. 4. 1

개정 2024.11.29

개정 2025. 1. 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연봉제운영규정 제2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임교원의 비누적 성과급(이하 “성과급”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성과급은 재직교원 성과 제고, 우수교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재직중인 전임 교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한 후 차등하여 지급하되, 부임 4년 이내 조교수 및 부임 2년 이내 부교수, 교수에게 제4조의2의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보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:2024.4.1)

제3조(평가방법 및 대상기간)

- ① 각 학과(학부)의 장은 교육, 연구, 봉사 분야에 관하여 대학의 공동평가지표를 기초로 학과(학부)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평가항목 및 비율을 설정하여 평가하되, 연구분야 반영비율은 70%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인문사회학부는 연구분야 반영비율을 70%이하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:2024.4.1)
- ②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교육, 연구, 봉사 분야의 업적을 평가한다.(개정:2025.1.1)

제4조(평가절차 및 성과급 책정)

- ① 각 학과(학부)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근거로 소속 교원의 성과급을 책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교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책정내역을 근거로 교원 개인별 성과급을 조정 및 확정하여 시행하고, 탁월한 업적이 인정된 교원의 경우 총장이 정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부총장, 대학원장, 각 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각 학과(학부)의 장에 대한 평가는 총장이 별도로 수행한다.
- ④ (삭제:2024.4.1)
- ⑤ (삭제:2024.4.1)

제4조의2(평가등급)

- ① 학과별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며, 등급별 인원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인원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 (신설:2024.4.1)

구분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구성비율	25%	25%	25%	25%

② 제4조 제3항의 총장 평가 대상자와 부임 4년 이내 조교수 및 2년 이내 부교수, 교수는 제1항의 등급별 인원 구성비율에서 제외한다. (신설:2024.4.1)

제4조의3(성과급 지급제한) 평가대상 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그 징계의 처분 일자가 평가대상 업적기간에 포함되는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.(신설: 2024.12.00)

제5조(지급시기 및 대상)

① 성과급은 매년 3월에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:2024.4.1)(개정: 2024.12.00)

② 제2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기간내에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성과급 지급 월 1일 이전에 부임한 신입교원은 당해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별도평가 없이 B등급을 일괄 부여한다. (개정:2024.4.1.)

제6조(재원) 성과급의 지급 재원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이의신청)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43조의 2를 따른다.

제8조(준용)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성과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 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19년 6월 17일 제정,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 개정,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4년 11월 29일 개정,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 개정, 시행한다.